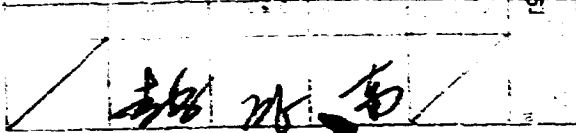


제 1714 호
1993. 1.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이 상 관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관
안 해 : 한국컴퓨터산업(인체)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보

차 례

● 조 례 (우선방송반영조례)

제 2974 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2
제 2975 호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유위한시설의세면제에관한조례	8
제 2976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9
제 2977 호	서울특별시소방시설치조례중개정조례	13
제 2978 호	서울시철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14
제 2979 호	서울특별시공설도지·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	15
제 2980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8
제 2981 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1
제 2982 호	서울특별시육의장고물동관리조례중개정조례	21

일									
월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서울은 언제나 아침입니다”

02101993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행정관할구역인접지역의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 공포한다.

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백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74호

서울특별시행정관할구역인접지역
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관할구역인접지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대부분란 말의 전부전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 보 관	구 분 장
<p>1. 유선방송사업허가업무 중 자가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가. 자가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허가거부 관련 사항</p> <p>나. 자가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신청·심사 및 합의 등에 관한 사항</p> <p>다. 체신부장관의 자가유선방송 시설 건사결과 보고수리에 관한 사항</p> <p>라. 자가유선방송사업의 일시허가 및 임시허가취소에 관한 사항</p> <p>마. 자가유선방송사업허가장의 교부에 관한 사항</p> <p>바. 자가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신고수리 및 합의에 관한 사항</p> <p>사. 자가유선방송사업 승계에 관한 사항</p> <p>아. 자가유선방송사업 이용약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p> <p>자. 자가유선방송사업의 유선방송 실시결과와 보고수리에 관한 사항</p> <p>차. 자가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검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p> <p>카. 자가유선방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p>	<p>○ 유선방송법령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p> <p>○ 동법 제3조 제2항제1호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p> <p>○ 동법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p> <p>○ 동법 제7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p> <p>○ 동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p> <p>○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p> <p>○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8호</p> <p>○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p> <p>○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0호</p> <p>○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1호</p> <p>○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p>

다. 자기유치개발사업의 허가권 소·사업계획 및 회계법 부속 의 관할 사항	○ 제법 제23조 및 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부. 자기유치개발사업의 허가권 별면 부속·영수증관할 사항	○ 제법 제23조 및 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4호

(별표)의 단위명칭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11. 업무종류에 대한 업무명칭</p> <p>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으로 업무명칭을 가진 (별표)의 직종(직종명)을 포함하는, 직무수행 기관의 공무원의 직종(직종명) 및 부속</p> <p>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당해 기관 내 직종(직종명)·직무명칭 및 부속</p> <p>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당해 기관 내 직종(직종명)과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종(직종명) 및 부속</p> <p>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5 제63조, 제65조, 제65조의2</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p> <p>○ 지방자치단체공무원법 제26조제2 제27조</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5 제63조, 제65조, 제65조의2</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5 제63조, 제65조, 제65조의2</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제16조</p>	<p>5급 이상 공무원 승급으로 하는 사업소장</p> <p>4급 공무원승급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촌지도소장 포함)</p> <p>5급 공무원승급으로 하는 사업소장</p> <p>5급 이상 공무원 승급으로 하는 사업소장</p>
--	--	--

(별표)의 보건사회국란 중 제42호를 삭제하고, 제4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9호 내지 제1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의 산업경제국란 중 제47호 내지

47. 업사용기자재의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조업의 허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 제7호	구 창 장
--	---	-------------

<p>나. 제조업의 양도 및 합병인가 다. 제조업의 후·보지 등의 신 고수리·회개권소 또는 장지 명령</p> <p>48. 여력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 의한 보고·검사 등 가.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효율 표시기자재 및 열사용기자재 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 업자·시공업자 및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 나. 시료제공의 의무와 열사용 기자재의 과기·수리 또는 과 조방법 개선의 명령</p> <p>49.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신고의 수리·지정 취소 또는 정지명령</p> <p>119.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 등에 의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대 한 감독·확인</p> <p>120. 냉·난방 온도 제한기관의 준 수에 대한 지도·조사 및 감독</p> <p>121. 두허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 공업자가 설치한 위반 광고물 등의 철거 등 조치</p> <p>122. 한국열관리시공업회 저부에 대한 지도·검사 등</p>	<p>○ 동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 령 제47조제1항제7호</p> <p>○ 동법 제35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7호</p> <p>○ 동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 령 제47조제1항제10호</p> <p>○ 동법 제82조제2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p> <p>○ 동법 제41조제1항, 제3항, 제46 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 제8호</p> <p>○ 동법 제21조, 제42조제2항, 제 47조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 령 제47조제1항제3호</p> <p>○ 동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 규칙 제23조</p> <p>○ 동법 제43조제3항 및 동법시행 령 제47조제1항제9호</p> <p>○ 동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 제47조제1항제12호</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별표)의 도로국관 중 제9호 내지 제12 호의 수입기관관 중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을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환경녹지국관 중 제80호, 제81 호, 제85호 및 제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관 중 제87호를 삭제하며, 제88호 내지 제9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80. 자가방지사설 설계·시공의 승인</p>	<p>○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동 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의2호</p>	<p>구 청 장</p>

81. 유류관리소장보 임명승진 및 해임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관리보진관 제12조 및 유 류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2단 ○ 상무·관외유류관 제12조 및 유류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 유류관리보진관 제13조 및 유류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5단 ○ 유류관리보진관 제13조 및 유류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5단 	부	관	관
85. 유류차의 수시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검진보진관 제37조제1항 및 유류시행령 제31조제1항제17호 ○ 상무·관외유류관 제37조제1항 및 유류시행령 제12조제1항제12 단 	부	관	관
87. 유류관리소장보 임명승진, 해임승진 및 해임승진 임명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관리보진관 제38조 및 유 류시행령 제32조제1항제16호 ○ 상무·관외유류관 제38조 및 유류시행령 제12조제1항제13단 	부	관	관
88. 유류관리보진관, 유류관리보진 관 유류관리소장보 임명승진 및 다량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검진보진관 제10조제1 항 및 유류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호 	부	관	관
가. 유류차검진차량에 유류관리 검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검진차량에 유류시행령 제 14조제1항제2호 			
나. 유류차검정차량에 유류·유류· 유류관리소장보의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 제15조제1항 및 유류시행 령 제14조제1항제3호 			
다. 유류차검정차량에 유류차량 검사 및 유류차량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 제16조제1항 및 유류시행 령 제14조제1항제4호 			
라. 유류차검정차량에 대한 시정· 장외 유류차량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 제17조 및 유류시행령 제 14조제1항제5호 			
마. 유류차검정차량에 대한 사업 장외 이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 제18조제1항 및 유류시행 령 제14조제1항제6호 			
바. 유류차관리차량의 안전 및 계 입신뢰의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 제19조 및 유류시행령 제 14조제1항제7호 			
사. 유류차관리차량의 변경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 제23조 및 유류시행령 제 14조제1항 			
아. 유류차유류물 사용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차 제28조제1항 및 유류시행 령 제14조제1항제8호 			
자. 유류차유류물 사용에 대한 보고 등 명령 및 검사				

<p>주. 영장</p> <p>가. 영장부령의 전부. 영수부</p>	<p>○ 영장부령 제22조 및 영장부령 제23조 제1항제2호</p> <p>○ 영장부령 제24조 및 영장부령 제25조 제1항제2호</p>	
<p>89. 행정경찰부령의 전부 다음 영수부</p> <p>가. 영장부령의 전부. 영수</p>	<p>○ 행정경찰부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p>	구 청 장
<p>나. 영장부령의 변경부</p>	<p>○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8조제1항제2호</p>	
<p>90. 국가안전보장법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p>	<p>○ 국가안전보장법 제3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1호</p>	구 청 장

《법령》의 변경부령 중 제2호, 제12호 및 차관리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3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0호, 제11호, 제75호, 제7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21호, 제60호 및 제6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8호의 수입기판란 중 "자동

<p>10. 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의 운송 계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 시시간의 연장승인</p>	<p>○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p>	구 청 장
<p>11.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 수리</p>	<p>○ 동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6호</p>	구 청 장
<p>2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폐실의 경우의 조치</p>	<p>○ 자동차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 행령 제22조제1항제1호</p>	구 청 장
<p>60. 창고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p>	<p>○ 화물유통추진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3 호</p>	구 청 장
<p>나.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신축 신고서의 신고수리 및 변경 신고수리</p>	<p>○ 동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 령 제16조제1항제13호</p>	
<p>다.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p>	<p>○ 동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4호</p>	
<p>라.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 소수리</p>	<p>○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5호</p>	
<p>마. 사업계획·상호·창고의 위 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신 고 수리</p>	<p>○ 동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6호</p>	

<p>다. 창고업자로서 부하 부대리의 부과·징수</p>	<p>○ 동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7호</p>	
<p>사. 임차인으로서 임차권 설정 의사의 신청수리</p>	<p>○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6호</p>	
<p>아. 표준약관을 창고업자와 로 계약한 경우의 신고수리</p>	<p>○ 동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8호</p>	
<p>자. 작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 위의 중지 기타 필요한 이행</p>	<p>○ 동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6호</p>	
<p>차. 사업승계의 수리(양도·양 수상수·법인합병 등)</p>	<p>○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6호</p>	
<p>가. 사업의 중지·폐지 및 법인 해산의 신고수리</p>	<p>○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6호</p>	
<p>다. 창고업자로서 담보 제공금의 부과·징수</p>	<p>○ 동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16호</p>	
<p>나. 보관금의 부과</p>	<p>○ 동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20호</p>	
<p>하. 창고업자로서 부하 부대리의 부과·징수</p>	<p>○ 동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 령 제16조제1항제21호</p>	구 청 양
<p>63.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보 지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p>	<p>○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7호</p>	구 청 양
<p>75. 개인택시·개발화물·개인용 달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 수인가</p>	<p>○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5호</p>	구 청 양
<p>76. 일반화물터미널 업무 중 다음 의 사무</p>		구 청 양
<p>가. 일반화물터미널의 명칭·위 치·규모·구조 또는 설비변 경의 신고수리(전용화물터미 널 포함)</p>	<p>○ 화물유통촉진법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3호</p>	
<p>나.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p>	<p>○ 동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 령 제16조제1항제4호</p>	
<p>다. 공사계획 내용조정</p>	<p>○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 령 제16조제1항제4호</p>	
<p>라. 공사완성 검사수리</p>	<p>○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 령 제16조제1항제4호</p>	
<p>마. 일반화물터미널 이용약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p>	<p>○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6호</p>	
<p>바. 일반화물터미널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수리</p>	<p>○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1항제7호</p>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
시정비특별회계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93. 1. 13

서울특별시시장 이상태

●서울특별시조례제2976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제15조"를 "제6조·
제8조·제13조·제14조·제15조"로 하고 "제8
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목적의 이용
기준"을 "목적의 관리"로 한다.

제2조의 제7항을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
치기준"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
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중천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의 이용 및 공원시설은 모든 사람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대외적인 열
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그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공원시설의 일부"로 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말미에 단
서 및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추
가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
를 면제하거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 등에 의거 무
상귀속되어 개발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
고자에게 관리 위탁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

리(공공의 이용)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에 관하여
의용허가한다.

3. 기타 시장의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
리를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공원시설을 200년도 이상 유휴 관리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
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유탁관리료법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
용하여 입찰투쟁 조정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공원의 이용허가 및 관공료) 중 시
장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공원이거나 할 수 있는 공원의 관공료를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
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목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라
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도무엇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영 제5조제8호 내지 제11의2호에 규정
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
가 당해 공원의 성격·기능·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수립
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
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전용허가가 공중의 안전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
한 공원에서라도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전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한 원상회복 의무자 또는 관리비용 부담자의 행위가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남의 경우 지방세 제남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양의은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분가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 적용을 "녹지의 관리"로 하고, 제1항 중 "시장의 허가"를 "구청장의 허가"로, 제2항 중 "시장예계"를 "구청장예계"로 한다.

제1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율 가로저르는 시상도로의 설치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인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는 아니된다.
3. 고속도로면, 자동차 전용도로면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4. 도로면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풍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투상상 진입구와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면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6. 공업단지면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 내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중

장에 의한 개발사업으로의 개질이 의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 단서 중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을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공원·녹지의 소유구분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주체와 자치구간의 소유구분은 (별표 6)과 같다.

② 공원·녹지의 취득 및 조성업무의 따른 비용은 제1항의 소유구분액 따라 부담한다.

(별표 1) 공원인장료 중 어린이대공원의 어른 "600"을 "700"으로, 청소년 "300"을 "330"으로 하고,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어른 "1,000"을 "1,150"으로, 청소년 "800"을 "950"으로, 어린이 "500"을 "540"으로 한다. 울진 제1근린공원의 어른 "800"을 "900"으로, 청소년 "600"을 "700"으로, 어린이 "500"을 "580"으로 하고, 비교관의 "적영공원의 경우"를 "적영공원 및 공단위탁 관리공원의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비교관 말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 인근 임대료 추정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상을 조정기준은 92. 1. 1 이후의 공천시설관리위원회 및 점용료 결정에 적용한다.

③ (유치이용허가 등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 제17조 및 제19조 규정대로 함으로 유치이용허가를 받았으나 원상회복조치한 승인을 받은 부분은 제17조 및 제19조 개정규정에 의하여 유치이용허가 또는 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재산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소유주권 및 타부 재산취득청구권 각자의 효력은 인정함을 본다.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공원명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원)	비 고
공 동	운동장 사용	1회 3.3㎡당	15	
	사 진 활 영 (상시영리행위)	1인 1년당	110,000	
유 회	영 화 활 영	주간 1회당	55,000	야간은 주간의 2배
	녹 화	1시간당	11,000	
		초과시간당	5,500	
	유 회 시 설 운 동 시 설 기 타 시 설	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규모·부차의 및 민간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합작하여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정하며,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를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다만, 운동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사용료는 동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유희시설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목적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대 공 원	돌고래쇼장	어 른 1회당	350	
	관 랑 료	청소년 1회당	230	
		어린이 1회당	110	
어린이 대공원	야외음악당 사 용 료	주간 1회당	33,000	야간은 주간의 2배
남 산 공 원	식물원관람료	어 른 1회당	230	
		청소년 1회당	120	
		어린이 1회당	50	
	차량통행료	버스, 대형화물	700	
		승용, 마이크로버스	500	
	이륜, 소형화물	300		
전망대입장	어 른 1회당	1,200	부가가치세 별도	
	청소년 1회당	800		
	어린이 1회당	800		

(주) ○ 단제는 기본료율의 30%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인허조경할 수 있음.

○ 어린이 : 4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 단 제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

(별표)		서울시의 경찰·위생·감찰구별	
명	구	차	구
종로소방서	종로구 누상동 146-2		종로·종로구 및 서초구 일부
중부소방서	중구 무학동 43-7		중구·종로구 및 중대원구 일부
상동소방서	상동구 구의동 233-23		상동구 일원
용산소방서	용산구 한강로 2-89		용산구 일원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구 경안동 434		동대문구 및 중랑구 일부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00		영등포구 일원
성북소방서	성북구 종암1동 3-72		성북구 일원
도봉소방서	도봉구 방학동 708-1		도봉구 일원
노원소방서	노원구 화계동 215-63		노원구 일원 및 중랑구 일부
서부소방서	은평구 봉선동 48-5		은평구 일원 및 서대문구 일부
마포소방서	마포구 신수동 100		마포구 일원
강남소방서	강남구 삼성동 171-3		강남구 일원 및 서초구 일부
남부소방서	서초구 반포동 190-2		관악구·동작구 일원 및 서초구 일부
강서소방서	강서구 동촌동 630-2		강서구 및 양천구 일원
강동소방서	강동구 상내동 541-39		강동구 및 송파구 일원
구로소방서	구로구 고척동 63		구로구 일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78호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설묘지·공설화장장외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79호

서울특별시농업묘지·공설화장장의관리
및사용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농업묘지·공설화장장의관리및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농업묘지시설의설치및
관리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영역
한담환(이하 "범"이라 한다) 제7조의 규
정에 의거한 서울특별시농업묘지시설의 설
치·관리 및 사용등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묘시설"이라 함은 조성묘지, 비조
성묘지, 납골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화장장 및 답골당 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
한다.
2. "조성묘지"라 함은 개장된 분묘의 명
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면에 일정구역
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
한다.
3. "비조성묘지"라 함은 시립묘지 중 단
지를 조성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
다.
4. "납골묘지"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사면에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5. "적출물"이라 함은 신체로부터 적출되
거나 절단된 장기, 사태아, 태반 및 수족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등) ① 서울특별시립 장묘시설
(이하 "장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규획으로 결
한다.

제4조(사용허가)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권료) 묘지의 1기당 사용권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성묘지(납골묘지를 포함한다) : 6.6표
 2. 비조성묘지 : 6.6표 이상 19.8표 미만
- 제6조(사용료등) ① 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은 (별표 2)와 같다. 단, 조성묘지 관료
관리비는 매 3년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서울
특별시 수입공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상한보조금 제7조 규정에 의한 상한보
호내상자
2. 국가유공자석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
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

제7조(사용기간) ① 묘지의 사용기간은 15
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 시
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권의 소멸등)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
다.

1. 정당한 사용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
개월 이대묘 묘지나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대묘 화장장
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
에 신고를 한 경우

② 정당한 사용 없이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장의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조성묘지의 분묘관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도 불응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3조(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의 명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묘비를 세우고 시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분묘의 관리 책임) 시립묘지 내 분묘의 관리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성묘지: 시장
2. 비조성묘지: 사용자

제15조(원상회복 및 심비면상) 시장은 사용자가 장묘시설 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심비면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납골당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 납골당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여사당유골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시립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장, 납골당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

후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관리운영권 이 조례의 위한 중수사항과 수탁의 관부상 적시사항을 관 수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 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지 도지원을 지원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 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로 보편사항을 포함하여 하 거 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 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이 규정된 사항의 보편사항 또는 장부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 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례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장표시설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본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5조제4 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일제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토지의 사용면적은 제5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조경표지(종전규정에서 등간표지)와 분묘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장표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표시설의 명칭 등

명 칭	관리소 소재지	관 장 사 항
장표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대저동 산 178-1	장표시설 총괄운영, 사업소 내 시설운영
망우리묘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 15	망우리묘지 내 시설운영
내곡리묘지	경기도 남양주군 전철면 내곡 리 산 99	내곡리묘지 내 시설운영

영역	관리소 관할지	관장 사항
북부관리소지	경기도 고양시 북부동 산 4-1	북부관리소지 내 시설운영
용미리제1묘지 (종전규정의 용미리묘지)	경기도 파주시 용미면 산 91-1	용미리 용미리제1묘지 내 시설운영
용미리제2묘지 (종전규정의 공천묘지)	경기도 파주시 용미면 산 65-1	용미리제2묘지 내 시설운영
(별표 2) 장묘시설 사용료 등 (단위: 원)		
구분	내 용	요 금
묘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묘지 (3.3㎡당) • 비조성묘지 (3.3㎡당) • 조성묘지 분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0 21,900 44,200
화장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단 13세 이상) • 소인(단 12세 이하) • 사산아 • 계장유골 • 직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구당 15,000 1구당 12,000 1구당 5,000 1구당 7,000 10kg당 8,000
납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당 (15년 사용) • 1구당 (10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 10,000
<p>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복 ㉔</p> <p>●서울특별시조례 제200호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00"을 "200"으로, "50"을 "100"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별표 1) 기분전용사용료(평일 주간 기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운동장명	체육경기	체육이외행사	
잠실종합운동장	체육관	326,000	
	수영장	09:00~18:00	1,418,000
		09:00~12:00	470,000
		12:00~18:00	1,198,000
	야구장	385,000	
합계	2,122,000	849,000	
문답관운동장	장승체육관	164,000	
	축구장	229,000	
	야구장	231,000	
	수영장	107,000	
	정구장 (면당)	-	
	배구장	51,000	
	탁구장	51,000	
북동운동장	주경기장	217,800	
	야구장	363,0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료에 3할을 가산함.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할, 야간은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종합운동장 내 실내수영장의 동절기(11월~다음 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할을 가산하고, 야외형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하며 보조수영장은 5할을 징수함. ○ 잠실체육관의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1일당 체육관 기본사용료의 3할을 징수하고 보조관은 체육관 사용료의 3할을 징수함.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주경기장 기본사용료의 3할을 징수함. 		

(별표 2) 개인연습사용료(평일 2시간 기준)			
			(단위: 원)
운 동 장 별		요 금	
잠실종합운동장	체육관		3,000
	수영장 (외인)		1,800
		(소인)	1,200
	야구장		3,000
	주경기장		3,000
	주경기장 트레닝센터		400
북부종합운동장	체육관		1,500
	수영장		200
	야구장		1,500
	야구장 (1면당)		1,500
	정식수영장		3,400
	수영장		1,500
	운동장		500
북부야구장	수영장		3,000
	야구장		400
	야구장		3,000
비고	○ 소인(13세 이하)의 연습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정수함(수영장 제외).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인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정수함. ○ 월 회원 사용권 발행시는 기본료의 20일을 감한 금액으로 정수하며 트레닝센터 사용은 무료. ○ 트. 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 기타 사업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사용료를 준용하여 정수할 수 있다.		
(별표 3) 중계방송료			
			(단위: 원)
구 분		TV	라 디 오
제 목 행 사		160,000	60,000
제 목 어 의 행 사		240,000	120,000
비고	○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운동장별 중계방송료의 5할 정수		
	○ 경기(행사) 촬영은 운동장별 TV 중계방송료의 동액정수		
	○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해당 운동장 기본방송료의 2배 정수		
	○ 국내방송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5할을 정수		

